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기준 연구:

국내외 영상물 등급 제도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 수록 관련 제도 : 편찬상의 유의점과 영상물 등급제

IV. 결과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박유신, 이규정, 손지현*

초 록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수록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상물 선정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행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상물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영상물과 학생의 정서 및 건강, 교육적 효과성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국내외 영상물 관련 심의 및 등급분류 기준을 폭넓게 검토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정책 차원에서 영상물 등급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의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일곱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영상물 선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용도서에 수록하기 위한 영상물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측면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영상물 등급 제도의 범주 항목 및 연령별 준거를 참고하여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 선정 지침을 상세화해야 한다. 넷째, 명백한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영상물 등급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 지침 설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교과용도서 개발 전 과정에 영상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 일곱째, 교실 수업에서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

주제어 : 영상물 등급 제도, 교과용시각자료, 교수·학습매체, 청소년 보호, 디지털 교과서

*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책과제연구인 「교과용 도서 사진·삽화·영상 선정 시 유의점 연구」(2016)를 수정, 보완한 연구임.

I. 서론

급속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과용도서에 수록된 사진·삽화·영상의 교육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등의 역할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교과용도서¹⁾의 경우 사진·삽화 및 영상²⁾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8학년부터 2020년까지 각급 학교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초등 3~6학년 사회, 과학, 영어와 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 영어가 대상이다.³⁾ 이처럼 교과용도서에서 영상물의 교육매체로서의 위상은 점차 강조될 것이다.

영상물의 경우 학습자의 주목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문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습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학습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따라서 영상물은 기존의 서책 기반 교과용도서에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점차 주요 수업 텍스트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 교육을 대비함에 있어 그 교육적 효과성 및 어린이·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된 수준 및 내용의 적합성 등에 있어 더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 및 선정과 관련된 연구 및

1) 교과용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959호, 2015.1.6.) 제 2조(정의) 근거’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하며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칭하는 용어이다.

2) 영상은 본래 ‘이미지(image)’를 번역한 것으로 본래 피사체를 광학적으로 비추어낸 영상 또는 사물의 모습이 반영된 상(像)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사진보다는 영화, 애니메이션, TV, 디지털 영상 등 ‘동영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용어 정의를 따른다.

3) 경향신문, 「현장선 “무용지물” 이라는데... 디지털 교과서 또 강행」(2016.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82231015&code=940401#csidx1d8311547d56c648d475df3e3691691, 검색일자 2017년 4월 3일.

제도적 방안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 집필 및 심의 단계에서는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의 사진·삽화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서 사진이나 삽화에 관한 제도나 규정은 대부분 서책형 도서를 전제하고 있기에 영상물 선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사진, 삽화 등과 관련된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은 정지 이미지인 사진 및 삽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영상물을 위한 별도의 기준과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영상물의 경우 시각 뿐 아니라 복합매체로서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사진 및 삽화와는 차별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를 위해 자체 제작한 영상물 뿐 아니라 기존의 영상물인 영화, TV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수록되기 위한 체계화된 준거가 필요하다. 이 준거는 영상물을 교과용도서에 포함하기 위한 집필 및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체계화된 적용 기준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을 위한 제도적 준거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학습자의 학년 수준에 적합한 영상물 등급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의 학년별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과용도서에 수록되는 사진·삽화·영상의 경우 구체적 논의가 부재하다. 현재 상업적 영상물을 포함한 일반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나⁴⁾, 교과용도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서 상업적 영상물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교과용도서의 수록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거나 영상물에서 일부 발췌하여 수록되므로, 교과용도서를 위한 별도의 영상물 등급 선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다루는 영상물 등급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의 목적과 아울러 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특히 미디어

4) 손지현, 이정기, 박기범, 박유신, 『교과용도서 사진·삽화·영상 선정 시 유의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16.

선진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로써, 연령별로 상영 가능한 등급을 공지하고 관람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중인 단계이며, 영상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이는 종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영상물 등급제도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영화대본 심의, 삭제 권한 등을 없애고 그 대신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도입된 것으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존의 심의제도를 대체한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그 헌법적 가치를 2007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유럽의 경우 영상물 등급분류제의 근거로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⁵⁾ 이들 영상물 등급제도는 공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문화적 허용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하여 내용을 범주화하고 수준별로 이를 체계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정서적 역할 및 발달단계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영상물 등급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 등급 분류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영상물 시청의 정서적 효과 및 발달단계

1. 영상물 경험의 정서적 효과

교육적 영상물의 정서적 효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영상물의 정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1970년대의 TV 보급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1970년대는 본격적으로 TV가 보급된 시기로서,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영상물을

5) 조혜정, 박선이, 양이정,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과 청소년 보호』, 나무와 숲, 2013, p. 25.

비롯한 미디어의 선정성 및 폭력성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TV의 보급과 함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범람하게 되었다.⁶⁾ 따라서 1970년대부터 영상물의 선정성 및 폭력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Berkowitz는 공격단서 이론을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이 개인의 공격성을 유발시키며 더욱 선정적인 영상을 원하게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Zillmann은 흥분전이 이론을 통해 포르노그래피가 성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 시키며 공격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⁷⁾ Bryant와 Rockwell는 프라임 타임에서의 선정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효과를 논의하였는데, 프라임 타임대의 선정적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청소년들이 비윤리적인 성적인 상황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훨씬 관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였다.⁸⁾ Dexter et al.은 가학적 폭력과 성적 요소가 혼합된 슬래셔 영화를 많이 본 피험자일수록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둔감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⁹⁾ 이 연구에 의하면, 심지어 성적 폭력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R 등급의 선정적인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많이 노출된 피험자들은 성차별적 반응을 보이게 되거나 데이트 강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¹⁰⁾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영상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영상물의 선정성 및 폭력성이 수용자의 폭력적 성향을 높이고, 성적으로 비윤리적이

6) 권만우, 심재웅, 정홍인, 『영상물 등급분류의 과학화』, 나무와 숲, 2013, p. 65.

7) Zillmann, D. "Excitation transfer in communication-mediate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7, No.4.(1971), pp. 419-434.

8) Bryant, J., & Rockwell, S. C. (1994).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ming on adolescents' moral judgment.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 183-195.

9) 권만우, 심재웅, 정홍인, 앞의 책, p. 37.

10) McKenzie-Mohr, D., & Zanna, M. P. Treating women as sexual objects: Look to the (gender schematic) male who has viewed pornograp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6, No.2.(1990), pp. 296-308.

고 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미디어의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미디어 소비자가 행동하는 방식들이 상당 부분 TV, 라디오, 영화, 및 인터넷에서의 상호 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설명한다.¹¹⁾ 김이경, 이성규, 이향기, 지선하는 국내 청소년들의 영화 속 흡연 장면의 노출과 현재 흡연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영화 속 흡연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 등급 분류 기준 강화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영화의 흡연장면 삽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외에도 미디어 소비자가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에 정서적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특히 등급제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를 역설한다.

한편 영상물 등을 메시지 자극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생리적 자극을 측정하는 연구들 또한 진행되었다. Montoya et al.은 분노와 공포심을 자아내는 영화가 관람자의 심장박동과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Both et al.은 시청자가 선정적 내용을 관람한 후 성적 반응도 및 성적 행동을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측정한 연구를 진행하였다.¹³⁾ 권만우, 심재웅, 정홍인은 영등위 상영 등급에 따른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세 등급의 영화를 15~18세의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게 제시하고 자율신경계의 생리 반응과 뇌신경계의 반응을 복합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생리반응 및 뇌신경계의 반응이 폭력물과 선정물에 대한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폭력적인 영상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하며, 영상물 등급

11) Harris, R. J., & Sanborn, F. W, *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Routledge, 2013.

12) 김이경, 이성규, 이향기, & 지선하. 「국내 청소년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보건사회연구』, 33(4), 2003, pp 497-517.

13) 권만우 외, 앞의 책, 재인용. pp. 43-44,

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⁴⁾

또한 영상물 등급제가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Tickle et al.은 미국 영화 협회 (MPAA) 등급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1996 년부터 2004 년까지 매년 100 건의 최고 수익을 올리는 영화 가 포함한 위험 행동을 측정하였으며.¹⁵⁾ 흡연, 알코올, 성적 내용 등의 묘사에서 더욱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Walsh & Gentile은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 등급부여의 대상인 미디어 콘텐츠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들 등급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 분류보다는 보편적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¹⁶⁾ 이들은 선정적, 폭력적인 미디어로 인한 다양한 공중보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급 시스템은 하나의 해결책이며, 학부모 및 보호자는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도가 하나의 편의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학부모, 혹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번 세심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교수·학습매체로서의 영상물과 발달단계

교수·학습과정에서 영상물을 활용할 경우, 학생의 연령 및 사회적 정서적 영향, 매체의 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물을 교수·학습매체로 활용할 때, 시청 대상자의 인지 능력에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수 기법이 설계, 실천되는 것이 필요하다. ¹⁷⁾발달 과정에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통합적

14) 권만우 외, 앞의 책.

15) Tickle, J. J., Sargent, J. D., Dalton, M. A., Beach, M. L., Heatherton, T, Favourite movie stars, their tobacco use in contemporary movie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smoking. *Tob Control*, Vol. 10.(2001), pp.16-22.

16) Gentile, D. A., & Walsh, D. A, A normative study of family media habi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2.(2002), pp. 157-178.

관점, 즉 발달에 있어서 정서적이고 직관적이며 지적인 영역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¹⁸⁾ 따라서 정서적, 도덕적 발달단계는 영상물의 정서적 영향력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성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Piaget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autonomy)’로 이행한다고 보았다. 어린 아동의 경우 도덕적 판단에 있어 성인 및 부모의 규범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지만, 아동 중기 즉 7~8세 이후는 자율성과 상호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단계에서 동료 및 양육자와의 소통에 의한 규범의 정당성 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 또한 학습자의 발달에 따른 정서적 변화를 보여준다. Kohlberg는 도덕성의 발달을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그 중 인간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각 인습 이전과 이후 수준으로 보았다. 제1수준은 ‘전도덕성’의 수준으로, 도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양육자의 의지에 의존하며, 2수준의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다. 청소년기에는 주변의 집단의 기대와 동조에 의해, 더 성장하면 사회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따른다. Kohlberg는 인간은 제 3수준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가치판단이 사회나 집단의 그것과 상충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6단계에 이르러 ‘보편적 원리’로서의 보편적 도덕성을 인식한다고 보았다.¹⁹⁾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는 교수·학습매체로서 영상물을 제시할 때, 그 내용 및 표현 정도에 대해 학생들의 정서적 수용 가능성 및 상호작용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영상물에 포함된 정서적, 도덕적으로 유해성을 가진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도덕적 판단 및 수용 정도를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17) Lesser, H. (Ed.), *Television and the preschool child: A psychological theory of instruc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cademic Press, 1977.

18) 김재웅, 박유신, 「애니메이션 교육 표준 분석 및 개선점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3), p 72.

19) Lawrence Kohlberg, 문용린 역, 『(콜버그)도덕성 발달 이론』, 아카넷, 2000.

구분		설명
제 1 수준 인습 이전 수준	1단계 (3~7)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2단계(8~11)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제 2 수준 인습 수준	3단계(12~17)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Interpersonal accord and comformity)
	4단계(17~25)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and social-order maintainin g orientation)
제 3 수준 인습 이후 수준	5단계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 (Social cintract orinetation)
	6단계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표 1.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영화언어의 이해와 관련된 Peters의 발달단계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 Kohlberg는 Piaget의 인지적 발달단계를 기초로 하여 영화 발달단계를 영화언어의 이해, 심리발달, 영화의 비판적 동화, 실제적 구분 등으로 나누어 적용시켰다.²⁰⁾ 이 연구는 영상물을 교과용도서를 비롯한 교수·학습과정에 투입할 때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화 언어 및 심리적 발달단계, 비판적 사고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학생의 학령 수준에 따라 영상물을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정서적, 심리적 요소들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7-9세의 경우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으며, 영화에 나타난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비판적, 논리적 사고는 10-12세, 즉 초등학교 고학년에 와서야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모방 심리가 매우 강하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영화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16-18세로서,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영상물을 통해 사유한다. 영상물을 제시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미칠

20) 이아람찬, 『영화교육론: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영향력과 정서적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순	단계	특징	
1	1단계 (7-9세)	인지와 사고	· 주변 영향을 받는 기초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행동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적 수용과 창조	· 미학적 경험은 놀이 활동으로 표현된다.
		흥미와 비판	· 학생들은 동화에 주된 관심이 있다. 나중에 '정말 일어난 것' 과 '행동' 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2	2단계 (10-12세)	인지와 사고	· 활동과 구상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 · 인지의 차이와 외부 세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미적 수용과 창조	· 학생들은 세계를 수용하는데 바쁘고, 이 세계를 모방하려 한다. · 미학적 감정은 어느 정도 지적 단계에 이르게 된다.
		흥미와 비판	·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 자신의 관점을 외치시킴으로써 점차 비판적인 감정이 발전한다.
3	3단계 (13-15세)	인지와 사고	·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이 보다 주체적으로 형성되지만, 구상성에 대한 통제가 존재한다. · 시간과 일상적 관계를 이해한다.
		미적 수용과 창조	· 미학적 관심은 기술적인 성취와 주인공의 행동에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흥미와 비판	· 어드벤처와 같은 기술적인 영역의 환상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진다. · 자기 선호와 강한 자기 감정(ego-feeling) 을 느낀다.
4	4단계 (16-18세)	인지와 사고	· 개인적 문제에 따라서 인지적 사고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구조 능력과 동일하다.
		미적	· 인생의 가치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매우 비

	수용과 창조	관적인 수용을 한다. · 개인적인 창조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와 함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흥미와 비판	· 비판적 자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 주체적인 선호에 의해 강한 인지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표 2. Peters의 영화 언어 발달 단계에서 심리적 발달 관련 내용

Ⅲ.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 수록 관련 제도 : 영상물 등급제

1.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 수록 관련 제도

가) 교과용도서에서의 영상물

본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영상물이 도입된 것은 2011년으로, 학습자료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실사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던 ‘e-교과서’에서 현재의 멀티미디어에 기반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현재 지도서의 경우 초등학교의 국어, 사회, 도덕, 과학, 음악, 영어 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학교의 과학, 현행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시범학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교과내용을 그대로 디지털교과서로 옮긴 것으로, 현행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교과내용을 그대로 디지털 교과서에 옮긴 것에 더해 멀티미디어 자료, 보충심화 학습자료, 평가 문항, 용어 사전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성을 검정 받은 것이다.²¹⁾ 2013년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규정』²²⁾ 제 2조 2호에서는 교과서의 정의를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21) 황준성, 김성식, 김현진, 온정덕, 장덕호, 정순원, 주형미, 임소현, 조옥경, 『2015년 이후의 디지털교과서 사업 재구조화 및 추진전략 방안』, 기술보고 (TR 2014-00-2). 한국교육개발원. 2014, p. 7.

2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864호 (시행 2017.2.22.), 2017.2.22., 일부개정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교과용도서에 영상을 비롯한 멀티미디어가 폭넓게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구분	e-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초기 버전	e-교과서 3.0	
보급 시기	‘11- ‘12	‘13-현재	‘14~현재(2009 개정교육과정)
내용	서책형 교과서와 동일		
학습 자료	별도의 학습자료 추가 없음	플래시, 애니메이션, 실사 영상 등 멀티미디어	실사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와 통합

표 3. e-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2)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과 관련된 제도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및 현장적합성을 높여 양질의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정도서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병행하며, 검정도서의 경우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정 심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²³⁾ 또한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에서의 참조를 위해 교과용도서 집필기준, 교과용도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편수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교과용도서 개발과 적용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현재 교과용도서의 개발 과정에서 영상물 수록과 관련한 지침이 안내된 것은 편찬상의 유의점이며, 검정 기준 또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및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에 수록되어 있다.

23)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5.

I,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1 목표 2 기본 방향 3 주요 내용
II.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1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 교육의 중립성 유지 3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4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5 내용의 선정 및 조직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7 범교과 학습 내용의 반영 8 기타 사항
공통 검정기준	
교과목별 검·인정 기준(예시)	

표 4.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 및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및 공통 검정기준

교과용도서의 개발과정에서 영상물의 선정은 대체로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각 항목들을 폭넓게 적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편찬 방향의 ‘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용도서 편찬 (2) 교과 교육과정의 구현’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의 개별화가 가능한 학습 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학습자료에 영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서 영상물은 학습을 돕는 시각자료인 동시에 교육내용으로서, 편찬상의 유의점의 각 조항인 헌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교육의 중립성, 지식 재산권, 교육과정 구현,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범교과 학습내용 등 모든 조항의 내용에 따라 영상물을 수록할 수 있다. 또한 ‘**8** 기타 사항’에서는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라는 항목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영상물 수록에 대한 법규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다소 포괄적이며, 글로 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가령 손지현 외²⁴⁾의 연구에서 진행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관련 조항이 명확한 교육적 목적 및 비판적 사고를 위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수록에 있어서도 적용되어 교과서에 실제적이고 폭넓은 자료의 수록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서 항목을 교육 내용과 교육 자료로 구분하여 사진·삽화·영상 등의 경우 보다 허용적으로 제시하되, 중립적 기술 등으로 교육내용의 중립성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시각자료의 외형체계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도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의 개발과정에 대한 또 다른 안내자료인 편수 자료는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는 안내서의 기능을 하는 자료이다. 그 자체가 강제 규범이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저자나 편집자, 발행인들이 이를 근거로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²⁵⁾ 편수자료에는 이외에도 표기·표현 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교과용도서를 위한 영상물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면 편수자료가 그 형식에 있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외의 영상물 등급제도

가. 영상물 등급제도와 아동·청소년 보호의 근거

세계 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영상물 등급분류제는 간혹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과 관련된 오해를 사고 있으나, 등급분류제는 오히려 검열 및 심의 중심의 제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로서

24) 손지현, 이정기, 박기범, 박유신, 앞의 글.

25)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5.

그 가치를 옮겨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의 경우 등급분류제도의 근거는 ‘부모의 관점’이며, 이에 대한 신뢰는 매우 견고하다. 영화등급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자격은 5~15세의 자녀를 둔 부모이며, 동시에 영화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²⁶⁾ 미국의 등급 분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상물 등급제도의 성격이 자율적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영상물 등급제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UN 아동의권리에 대한 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항에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 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7조에서는 세부 항목으로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영상물 등급제도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알맞은 작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는 청소년 보호법 및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등 법적 근거를 우선시하고 있다. 1996년 현재가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고, 영화 대본 심의, 삭제 권한 등을 없앤 등급분류제를 도입하면서 ‘연소자 보호’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또 2001년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대한 법률’로 그 근거를 설정하며 ‘청소년 보호’를 공식적인 가치로 설정하였다.²⁷⁾ 이러한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으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영상물을 접하였을 때, 무비판적인 수용 및 모방행위나 정서적 충

26) 조혜정 외, 앞의 책, pp. 126~127.

27) 조혜정 외, 위의 책, p. 16.

격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① 등급분류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을 지향해야 하며, 건전한 영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성인중국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⑤ 등급분류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감안하되, 개별 장면의 지속 강조 반복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야 한다.

⑥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해외의 영상물 등급제도

영상물 등급제의 역사는 검열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등급제가 시작된 스웨덴의 경우 1911년 국립검열위원회를 설립하여 엄격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던 것이다. 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전 반드시 심의를 받아 품위손상, 범죄, 청소년의 경우 상상력을 해치거나 공포와 충격을 주는 경우 상영을 금지하거나 장면을 삭제하는 권한도 있었다.²⁹⁾ 영국에서는 1913년 영화검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07년 처음으로 시카고 시장 직속의 위원회가 개별 작품에 대하여 상영 적합여부를 심사하였다.³⁰⁾ 1900년대 중반까지 영화 검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계 제 2차대전 즈음에는 정치적, 계급적, 사회적인 주제들도 검열의 대상이 되어 수정, 삭제, 상영금지가 이루어

28)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 2015.

29) 조혜정 외, 앞의 책, p 31.

30) 이용관, 「할리우드의 검열체계」, 『영화연구』, Vol.12.(1991), p 80.

졌다. 이러한 정치적 검열은 나치 독일 및 소련이 영화를 프로퍼 갠더 목적으로 상영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주로 선정성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검열이 이루어졌다

검열제는 영화예술의 표현의 자유 및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강조되면서 점차 등급제로 변화해 왔다. 등급제는 사진에 영화의 내용 및 표현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알맞은 연령에 상영을 허락하는 것으로, 등급제의 권고를 따른다면, 이 안에서 상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검열제의 폐지는 1948년 연방 대법원이 ‘영화제작규범’을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할리우드의 자체 검열을 담당하던 MPA는 1968년 검열제 대신 영상물 등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당대의 예술영화에 대한 관심은 각종 ‘윤리위원회’로부터의 검열로부터 영화를 자유롭게 하자는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자율적인 등급제도는 미국적 가치를 유지하고 시민의 노력으로 사회를 개선시켜나간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현재 미국의 등급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CARA는 할리우드의 영화산업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민간의 자율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및 호주의 경우 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운영된다. 적극적으로 등급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경우 영화검열위원회는 BBFC, 즉 영화등급분류위원회로 그 이름 및 역할이 바뀌었으나, 민간 기구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정책으로 등급제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BBFC는 등급 분류의 원칙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등급제도의 실시 이외에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및 및 어린이 대상 작품 분류에 대해 자문의 역할을 하는 APCV 등을 산하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호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영화등급분류 기구를 정부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에 따라 등급분류연령 기준 및 규범의 내용 및 선정 방식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 신념을 보여준다.

순	국가 및 기관명	웹사이트 url
1	남아프리카공화국 FPB	http://fpb.org.za
2	네덜란드 NICAM	http://www.kijkwijzer.nl
3	독일 FSK	http://www.fsk.de
4	미국 CARA	http://www.filmratings.com
5	싱가포르 MDA	http://mda.gov.sg
6	영국 BBFC	http://www.bbfc.co.uk
7	일본 영화윤리위원회	http://www.eirin.jp
8	캐나다 온타리오 OFRB	http://www.ofrb.gov.on.ca
9	캐나다 퀘벡 Régie du cinéma	http://www.rcq.gouv.qc.ca
10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11	호주 ACB	http://www.classification.gov.au

표 5. 세계 각국의 영화등급분류기관

세계 각국에서 제시하는 등급 분류 기준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학령 및 발달단계의 기준 연령을 중심으로 5~6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처럼 등급의 세분화는 세계적인 경향이다(조혜정 외, 2013; 60)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PG등급인데, 이는 부모와 함께 관람이 가능한 등급을 뜻하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의 제도이다. 네덜란드는 아래와 같이 등급제를 운영하며,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포스터 및 매표소 등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명	등급 기준 설명
CTC	광고 승인 이 있지만 아직 분류되지 않음
G	모두에게 적합함
PG	부모와 함께 시청 지도가 필요함
M	부모의 지도 필요하며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일부 어린이가 혼란스럽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발견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
MA	1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보통 수준의 폭력, 언어 또는 주제를 포함 할 수 있음
R	성인으로 한정함
X	음란물이 포함되어있어 성인용으로 제한함

표 6. 네덜란드의 연령별 등급 기준

위의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에서 결정한 범주에 적용되어 세부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영국의 경우 공통기준-맥락, 주제, 톤과 임팩트와 세부 기준-차별, 약물, 모방행동, 언어, 노출, 섹스 등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남용, 공포, 사회적 관습, 청소년 보호, 민족간 조화, 국익, 주제와 맥락, 효과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범주 분류는 각국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폭력성, 선정성, 약물, 알코올, 주제 등은 공통된 사항이다. 가령 최근 미디어 등급분류 제도 시행에 있어 공통적으로 주요 검토 항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성적 폭력(The Sexualization of Violence)’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면, 영국 영화 등급 위원회³¹⁾(The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는 가학적이고 성적인 폭력 장면의 표현은 영화 제작자들이 신중을 기해야 할 과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FPB는 아동이 관련된 성적 표현,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 혹은 성적 행위가 아동에게 노출되는 경우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 외 미국 CARA, 한국 영등위, 네덜란드 NICAM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점 자극적이고 그 빈도가 높아지는 성적 폭력 장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밖에 인권 침해 및 생명의 존엄성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BBFC의 조사 결과,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면의 경우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희생자가 강간을 즐기거나 가학적, 선정적인 폭력성을 강조한 장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학대, 고문, 죽음을 묘사한 장면 등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국은 법에 의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학대 장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등급을 부여한다. 그 예로 말이 언덕에서 넘어지는 장면, 작은 동물의 배를 갈라 죽이는 장면, 거북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 등을 자세히

31) 영국 영화 등급 위원회, <http://www.bbfc.co.uk/>, 검색일자 2017년 4월 30일.

묘사한 영화는 동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엄격히 규제한다.

<표 10>은 영상물이 ‘폭력’ 범주에서 각 등급별로 분류되기 위한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분류는 영국 사회가 영상물의 폭력에서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15세 등급이라도, 유혈이나 가학적 폭력은 허용하지 않으며, 성폭력에 있어서 무척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는 점 등이다. 공통 범주의 ‘주제’ 항목을 보면 등급분류시에 표현의 선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물 오용, 성폭력, 소아 성애, 인종 혐오 또는 폭력을 다룬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등급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정성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선정성이 없는 노출을 허용하며 가벼운 성적 행위를 연령별로 허용하고 있으나,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행위의 경우 15세 이상 등급의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분류	등급 기준	설명	
공통 기준	맥락	관점	섹스, 욕설, 폭력 등의 문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검토함 (역사적인, 판타지의, 사실적인, 현대적인 등 장르에 따른 작업 방식)
		태도	같은 어휘일지라도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태도로 사용한 경우, 가벼운 태도나 교육적 지도를 위해 사용한 경우보다 수위가 높다고 봄
		표면적인 의도	세부 설명 없음
		제작 시기	오래 전의 상황임이 명백하고 고루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낮은 수위로 간주함
		그 밖의 특이점	세부 설명 없음
	주제	※맥락은 영화 및 영상물의 수용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맥락과 관련된 등급 분류를 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기대와 특히 청중의 기대와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함	
		주제 자체도 고려하나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고려하여 표현의 선정성 등을 검토함. 가령 약물 오용, 성폭력, 소아 성애, 인종 혐오 또는 폭력을 다룬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등급에 적합	

분류	등급 기준	설명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주제가 18세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음.
	톤과 임팩트	성 및 폭력과 같은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어둡고 불안정한 톤으로 묘사된 작품은 더 높은 수위로 간주함. 이 때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고려 사항으로는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이 절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정도 또는 침해성 또는 유해한 행동이 묵과되거나 정상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있음.
세부 기준	차별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대다수의 저작물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급분류 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맥락을 함께 고려함. 다만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이 묵시적이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장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다 낮은 등급을 적용함. 전체적으로 그러한 태도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거나 작품이 다루는 시기가 분명하게 오래 전이고 어린이에게 거의 또는 전혀 흥미를 끌지 않는 경우에도 낮은 등급을 적용함.
	약물	전체적으로 취한 어떠한 조치도 마약의 오용을 촉진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약물 남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그 활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따라서 마약 남용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작품은 마약 남용을 보여주면서 위험성을 강조하는 작품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함. 어린이의 흥미를 끄는 작품에서 흡연, 알코올 남용 또는 약물 남용의 특징이 영상물 및 홍보자료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경우 및 BBFC insight에 별도 고시함.
	모방 행동	상상할 수 있는 행동 분류 결정은 범죄 및 폭력적인 기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나이프와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의 매력을 고려합니다. 반사회적 행동 (예 : 괴롭힘)을 무비판적으로 묘사 한 작품은 상위 분류를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전반적으로 취해진,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저작물은 분류를 절단하거나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상위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이 잠재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특히 교수형, 자살 및 자해) 관련 묘사가 삭제됨.
	언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에는 성적, 종교 또는 인종적 연관성이 있는 비속어 사용, 소수 집단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무례한 행동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함. 범죄의 정도는 연령, 성별, 인종, 배경, 신념 및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어, 표현 또는 제스처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카테고리에서 허용되는 단어, 표현 또는 제스처의 포괄적인 목록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

분류	등급 기준	설명
	노출	능함. 성적 의도가 없는 노출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류 수준에서 허용되며 성적 의도가 있는 노출은 일반적으로 성인 범주(18 또는 R18)에서만 허용됨.
	섹스	성행위의 묘사는 키스부터 미성숙 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명백히 성적인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함. 등급분류 체계에서 범주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행위의 묘사 수위가 높아짐. 모방 가능성이 있는 성행위(주로 성적 흥분이나 자극)만을 다루는 영상물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허용됨. R18 등급은 실제 섹스, 강한 페티쉬 (fetish)소재, 성적으로 노골적인 애니메이션 이미지 또는 기타 매우 강한 성적인 이미지의 선명한 이미지가 포함 된 성행위를 다룬 작업에 적합함. R18 영상물은 18세 미만의 누구도 입장 할 수 없는 허가된 섹스 샵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특별히 허가 된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음. 영상물에서 묘사된 활동의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방가능성에 관한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함.

표 7. 영국 영화 등급위원회 저작물 등급분류의 세부 등급 범주 및 설명

U	PG	12A/12	15
매우 경미한 수준의 폭력 문맥상 정당화되는 경우 경미한 수준의 폭력이 허용될 수 있음	경미한 수준의 폭력 역사, 코미디, 판타지 등의 문맥상 정당화되는 경우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지 않은 보통 수준의 폭력이 허용될 수 있음	보통 수준의 폭력이 있을 수 있으나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상해나 혈흔을 강조하지 않으며 문맥상 정당화되는 경우 드물게 유혈 장면이 허용될 수 있음 성폭력은 단지 암시적이거나 짧고 신중한 태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부 묘사는 문맥상 정당한 경우에 한함	강한 폭력이 포함될 수 있으나 고통이나 상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음 심한 유혈 장면이나 강도 높은 가학적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 성폭력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으나 성폭력에 대한 묘사는 문맥상 정당해야 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

표 8. 영국 등급분류의 <폭력> 범주의 등급별 기준

각국의 영상물등급분류기관은 영상물 등급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직접 등급 분류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며,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BBFC의 경우 홈페이지의 Educational Resources 메뉴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Rate a Trailer Yourself 라는 메뉴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등급을 매겨 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웹사이트인 CBBFC(<http://www.cbbfc.co.uk>)를 개설하여 청소년이 직접 자신이 관람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등급분류가 규제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교육과 연결된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NICAM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ABMC는 특별히 교육적인 영화에 추천등급을 부여하여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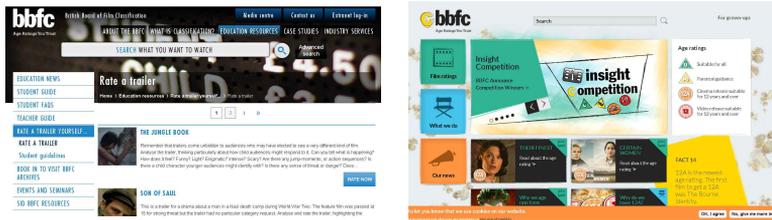


그림 1. 영국 BBFC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웹 페이지 및 교육메뉴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동으로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일상화 등 새로운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콘텐츠 경험 효과, 등급분류 이슈 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내용 심의 목적의 법정 기구의 등급분류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UCC 등 개인 영상물 제작이 활성화 됨에 따라 'You Rate It'(<http://www.yourateit.eu>)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개인

32) 조혜정 외, 앞의 책, p. 62.

이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범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 자동적으로 등급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의 영화등급분류제도가 검열에서 보호, 그리고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과 자율적인 미디어 생산 및 감상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한국의 영상물 등급제도

현재 국내의 미디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제도는 연령등급제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뿐 아니라 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영상물, 인터넷 콘텐츠, 게임물 등은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한 심의에 따라 등급제도를 판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각 미디어의 등급을 판별하는 기준 및 심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매체 종류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영상물	게임물
심의 기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게임물 등급위원회
법적 성격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내용심의 목적의 법정기구
근거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방송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심의 대상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그 외 만화,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이동 멀티미디어	공개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영화, 비디오물, 음악영상물 등	게임물

	사진첩, 화보, 소설 등의 도서류 등 전자출판물	방송 등	모든 정보		
심의 형태	사후심의	방송광고 -사후심의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	사후심의	음악영상물 이나 영상파일- 사전심의 음반음악파 일-사후심의 영화와 비디오 -사전심의 공연-사후심 의	사전심의
등급 구분 종류 및 표시 방법	유해간행물 (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모든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	-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급 구분 기준 범주	-선정성 등 -폭력·잔인성 등 -성범죄와 유해약물 등 -반사회성, 비윤리성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의 유해정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기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 위험 등	-선정성 -폭력성 -언어 -사행행위 등

표 9. 국내의 미디어 심의 내용

이들 심의를 살펴보면 선정성, 폭력성, 약물, 모방위험, 사행성(게임) 등 각 미디어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력의 가능성이 있는 범주에 한정하여,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대체로 일반적인 발달단계의 기준과 유사하다.

특히 영상물에 주목하여 보면, 영상물의 경우 방송 및 간행물 등과는 달리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관람 청취 불가 등급 및 제한상영가 등급 등을 설정하여 특별히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상물이 영향력이 큰 동시에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매체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급	내용
전체 관람가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작품
12세 관람가	만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경우
15세 관람가	만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작품
청소년 관람불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는 영상물로,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가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표현된 작품
제한 상영가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상물

표 10. 국내의 영상물 등급 별 기준(영상물등급위원회, 2016)

순	분류	내 용
1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 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 정도
2	선정성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 장면 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3	폭력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 손괴 및 억압, 고통 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5	공포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6	약물	소제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7	모방 위험	살인, 마약,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고무 자극

표 11. 국내의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

국내의 영상물 등급 기준은 주제, 선정성, 폭력,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으로 구별되며,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범주 별 연령기준에 따라 영상물의 등급을 정한다. 가령 ‘선정성’ 항목의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경우 ‘성적 맥락과 무관한 신체 노출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 성적 맥락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가벼운 수준에서 표현되고, 성적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은 것, 성적 내용과 관련된 소리, 이미지, 언어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연령의 수용자들이 피해야 할 기준을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등급 분류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IV.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을 위한 제언

교과용 도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라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집필 및 개발 과정에서 영상물 수록을 대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영상물은 그간 교과용도서의 설명을 돕고 흥미를 유

발하는 자료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향후 영상물은 주요한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형성하는 미디어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선정에 대한 상세한 기준 제시는 규제라기 보다는, 기준 안에서 더욱 자유롭게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물은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영상물의 경우 국내외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선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등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선정에서도 등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 도서 내 영상물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 교과용 도서의 수록과 관련하여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영상물에 특화된 내용을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용도서에서 영상은 ‘시각자료’로 간주되어 사진 및 삽화와 더불어 그 유의점 및 수록상의 안내를 하고 있으나, 영상은 사진 및 삽화보다 구체적이며, 체험적이고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매체로서, 차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내용에서부터 편집, 등장인물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은 교과용도서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영상물 뿐 아니라 영화, 방송 콘텐츠, 인터넷 영상 및 UCC 등 상당히 광범위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장르에 있어서도 일반적 실사영상에서 향후 VR 및 AR 등 체험적 매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인쇄 품질 및 내용, 표현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진 및 삽화 이상으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영상물의 내용 및 시각적 표현 이상으로 체험에서 오는 신체적 자극과 관련된 피로도 및 위험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교과서에 수록될 게임물과 관련하여서는 사행성 및 중독성 등 새로운 국면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은 부단히 변화하는 미디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두번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즉 젠더, 인종,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정한 가치관, 다양성에 대한 이해, 동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³³⁾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시각자료가 인권에 반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가령 이 연구에서는 사회탐구 5학년 1학기 삽화를 예를 들며,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표현되어 있음’³⁴⁾ 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학교 도덕 2학년 ‘국가발전과 국민’ 단원에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사진에서 대부분 유럽계 백인만이 묘사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숙은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한국의 교과용도서에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³⁵⁾³⁶⁾ 최근 국정교과서에서의 5.18 관련삽화 삭제 및 위안부 사진 삭제 등에 대한 논의들은 교과용도서가 영상물중심의 멀티미디어 교과서로 발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인권과 생명존중 등에 관한 기준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번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있어 정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내용별, 학교군별로 면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내외의 영상물 등급제의 범주 및 연령별 기준 설정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교과용

33) 구정화,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7.

34) 구정화 외, 앞의 책, p. 33

35) 이미숙, 송정식, 『한·일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양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 교과서 정책 및 삽화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Vol.90.(2012), pp. 65-77.

36) 이미숙,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양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 저·중·고학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학보, Vol.95.(2013), pp. 31-45.

도서의 편찬상의 유의점 등에는 현재 교육의 중립성, 범교과적 교육내용 등 다양한 교육 내용적 측면의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 등급제는 이보다 첨예한 내용, 즉 국내외 영상물 등급제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는 범주인 주제, 폭력성, 선정성, 약물, 주제, 공포 및 자극, 모방 위험 등을 중심으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허용 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 및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검정 기준 통과를 우려하여 무조건 관련 주제를 회피하거나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현재의 수록 관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체제작 영상물 뿐 아니라 다양한 기존 콘텐츠의 활용과도 관련되어 있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진은 국내외 미디어 콘텐츠의 등급의 기준이 되는 세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공성 및 윤리성을 저해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유목화 하였다. ‘선정성’, ‘폭력’, ‘부적절한 언어’, ‘공포 및 자극’, ‘모방 위험’ 등은 국내외 등급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기준이다. 첫째로 선정성을 고려한다.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를 고려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적 의도 및 선정성이 없는 노출은 모든 수준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성애적 표현을 다룬 경우는 모든 수준에서 관람을 불허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로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신체 손괴 및 억압, 고통 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등은 대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순화되어 표현된 것은 기본적으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저속한 언어, 비속어, 학습자에게 불쾌감 및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의 빈도와 표현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포 및 자극을 고려한다. 학습자의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를 고려한다. 또한 영상의 길이 및 편집상의 문제, 음향 등으로 인한 자극 및 피로도를 고려

한다. 특히 게임이나 VR 등이 교과용도서에 포함될 경우 신체적인 자극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모방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흡연, 살인, 자살,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약물, 각종 범죄 등에 대한 모방심리 등을 고려한다. 특히 이들이 교육적 목적이 아닌 흥미와 감각적 쾌락을 위한 차원에서 제시될 경우는 초,중,고 전 학년에서 수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네번째, 교과용도서에서 영상물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명확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일 경우 교과용도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되, 위 범주를 중심으로 연령별로 등급화하여 허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선정성, 약물, 모방위험, 폭력, 공포 및 자극, 부적절한 언어 등의 범주에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반영하되, 그 수준을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피터스의 영화감상 발달단계에서는 7~9세와 10~12세를 구분하여 영화감상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모방행동이 사라지고 비판적 사고가 생겨나는 시점을 논하고 있으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단계에서도 3~7세와 8~11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앞서 실시된 정책연구의 델파이 조사(손지현 외, 2016)에서도 나타난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초/중고’의 2단계, ‘초/중/고’의 3단계, ‘초저, 초중, 초고, 중, 고’의 5단계보다 64%의 높은 비율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별한 4단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등급이 점차 세분화되는 세계적인 영상물 등급분류 추세와도 부합된다.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선정성, 폭력, 모방위험 등의 요소를 가급적 지양하되, 명확한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 경미하게 표현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관련 요소가 제시될 경우 학생들에게 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교육내용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의 심의는 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의 재량 및 판단에 의해 수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종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며, 사회적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명한 등급기준은 집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과 관련된 지침은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 공식적인 문서의 차원에서 안내될 필요가 있다. 편찬상의 유의점에서는 보다 기본적인 원칙을, 편수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등급기준 및 범주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안내가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영상 수록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사례 제시 및 자가등급분류 시스템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 과정 등에 영상물과 관련된 별도의 항목을 개설하여 기준에 맞는 영상물이 알맞게 수록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수준에서 교육적 영상물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해결방안이다. 이는 교과용도서 영상물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 및 집필기간 등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공공기관, 즉 공영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영상자료원 등 국내의 공공 미디어 콘텐츠를 교과용도서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교과용도서를 위한 영상물의 등급기준 선정 및 집필 및 개발, 검정의 전 과정에서 영상물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교과용도서의 집필 과정에서는 일부 교과를 제외하면 영상물 및 시각이미지 전문가가 별도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상물은 글로 된 텍스트와는 별도의 미디어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영상물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함의들을 미처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영상물 등급기준 선정에서부터 교과용도서의 개발과정 및 검정의 전 과정에서 영상 이미지 비평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은 교과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협업하여 정확한

영상물의 수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및 호주 등 해외의 경우에도 영상물 심의의 과정에서 단순한 등급제의 적용이 아닌 심의위원들의 회의를 통한 개별 등급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일곱 번째, 교과용도서 뿐 아니라 교실 수업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교육용 영상물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의 목적은 교실수업을 보조하는 최선의 교재로서, 실제로 교수·학습과정에서는 교과용도서 외의 다양한 영상자료들이 활용된다. 또한 향후 학생들은 영상물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의 경우 정부기구 및 민간기구 차원에서 자국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자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국가수준의 영상물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동시에, 교사 및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영상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사 및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활용할 영상의 등급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등급 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가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용 도서의 집필에 있어 영상물 수록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에서 실행된 기초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이제까지 사진, 삽화 등 서책 중심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검정 기준 등에 있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내 영상물의 선정 기준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영상물 등급제도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에 있어 영상물의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점검하였으며, 더불어 교육학 및 심리학 차원에서 진행된 정서적 발달단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의 정서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교과용 도서의 영

상물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정서 및 건강, 교육적 효과성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의 정책 차원에서 영상물 등급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들은 현재 교과용 도서의 집필 관련 제도에 영상물 수록과 관련된 지침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국내외의 일반적인 영상물의 경우, 특히 선진국일수록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영상물 등급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엄격함이 영국, 호주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욱 발달한 국가에서 활성화 된 것도 흥미로운 점이기도 하다.

현재 영상물 등급제가 규제나 검열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으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의 영상물 등급의 역사는 검열의 역사를 탈피하고 자율적인 영상물의 상영 및 관람을 위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교과용도서의 영상물에 있어서도 현재처럼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활용에 있어 위축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안내하고 각 범주에 대한 허용 범위를 제시하여 무분별한 금지가 아닌 연령 단계에 합당한 자율적인 영상물의 제시 및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교육선진국의 사례들은 바람직한 미디어 활용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상물 등급제도의 운영은 단지 규제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연결되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이 감상할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것이 스스로 제작하고 공유하는 영상물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의 방향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영상물과 관련된 지속적인 노력이 곧 국가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되며, 미래의

자기주도적 학습 자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먼저 교과용 도서의 수록과 관련하여 편찬상의 유의점 및 편수자료 등에 영상물에 특화된 내용을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용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있어 국내외의 영상물 등급제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내용별, 학교군별로 면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선정성, 폭력성, 주제 등 민감한 내용의 등급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및 인권, 환경, 다양한 문화의 고려 등 영상물의 수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그 시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및 영상물 전문가 집단의 다각적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교과용도서를 넘어 일반적인 교실 수업 및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적 영상물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육현장 또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 교육의 중심에는 책, 즉 인쇄 미디어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러하듯, 교육 현장에서도 영상물을 비롯한 뉴 미디어는 급속하게 그 중심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는 교과용 도서의 영상물 수록에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 및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김재웅, 박유신. 「애니메이션 교육 표준 분석 및 개선점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3), 63-90.
-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7864호(시행 2017.2.22.), 2017.2.22., 일부 개정.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

- 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감정기준, 2015.
- 구정화,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7.
- 권만우, 심재웅, 정홍인, 『영상물 등급분류의 과학화』, 나무와 숲, 2013.
- 김이경, 이성규, 이향기, 지선하, 「국내 청소년의 과거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유무와의 관련성」, 『보건사회연구』, Vol.33, No.4.(2003), pp. 497-517.
- 로렌스 콜버그, 문용린 역, 『(콜버그)도덕성 발달 이론』, 아카넷, 2000.
- 손지현, 이정기, 박기범, 박유신, 『교과용도서 사진·삽화·영상 선정 시 유의점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16.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 등급분류 워크북』, 2015.
- 이미숙, 송정식, 「한·일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양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 교과서 정책 및 삽화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Vol.90.(2012), pp. 65-77.
- 이미숙,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통해 본 양국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연구: 저·중·고학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일본학보, Vol.95.(2013), pp. 31-45.
- 이아람찬, 『영화교육론: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이용관, 「할리우드의 검열체계」, 『영화연구』, Vol.12.(1991), pp. 79-96.
- 조혜정, 박선이, 양이정,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과 청소년 보호』, 나무와 숲, 2013.
- 황준성, 김성식, 김현진, 온정덕, 장덕호, 정순원, 주형미, 임소현, 조옥경, 『2015년 이후의 디지털교과서 사업 재구조화 및 추진전략 방안』, 기술보고(TR 2014-00-2). 한국교육개발원. 2014, p. 47.
- Bryant, J., & Rockwell, S. C,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ri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ming on adolescents’ moral judgment”,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 Social scientific, psychodynamic, and clinical perspectives, (1994), pp. 183-195.
- Zillmann,D. “Excitation transfer in communication-mediate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 psychology, Vol.7, No.4.(1971), pp. 419-434.
- Gentile, D. A., & Walsh, D. A, “A normative study of family media habits” .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3, No.2.(2002), pp. 157-178.
- Harris, R. J., & Sanborn, F. W, 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Routledge, 2013.
- Lesser, H. (Ed.), Television and the preschool child: A psychological theory of instruct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Academic Press, 1977.
- McKenzie-Mohr, D., & Zanna, M. P, “Treating women as sexual objects: Look to the (gender schematic) male who has viewed pornography”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6, No.2.(1990), pp. 296-308.
- Tickle, J. J., Sargent, J. D., Dalton, M. A., Beach, M. L., Heatherton, T, “Favourite movie stars, their tobacco use in contemporary movie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smoking” , Tob Control, Vol. 10.(2001), pp. 16-22.
- 영국 영화 등급 위원회, <http://www.bbfc.co.uk/>, 검색일자 2017년 4월 30일.
- 경향신문, 「현장선 “무용지물” 이라는데…디지털 교과서 또 강행」 (2016.8.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82231015&code=940401#csidx1d8311547d56c648d475df3e3691691, 검색일자 2017년 4월 3일.

ABSTRACT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of Media for the Textbook: Based on th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Media Rating Systems

Park, Yoo-shin · Rhee, Gyu-jeong · Sohn, Ji-hyun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prepare policies related to selecting media to be included in textbooks. Researchers looked at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how media affect children's and adolescent's emotion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al stages. Researchers also wanted to identify how the media is related to student emotions, health,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 researchers then examined a wide range of domestic media review and rating criteria, and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rating system of media at national level policy level.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 the researchers made seven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pecify media selection criteria in the guidelines for issuing textbooks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guidelines are needed to help review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human rights aspects of the media for inclusion in textbooks. Third, media selection guidelines in textbooks should be detailed with reference to categories and age based criteria of domestic and foreign media rating system. Fourth, the media rating system should be applied flexibly if there is a clear educational purpose. Fifth,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for setting guidelines for media collection of textbooks. Sixth, media experts should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of textbook development. Seventh,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support teachers to use self directed learning by using educational media in classroom instruction.

Key Word : media rating system, textbook, visual material, teaching and learning media, youth protection, digital textbook, media education

박유신(주저자)
서울석관초등학교 교사
(0278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22길 21
Tel : 02-959-1391
hoogh@naver.com

이규정(공동저자)
서울천호초등학교 교사
(0530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01-11
Tel : 02-470-9711
alexa8361@gmail.com

손지현(교신저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06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Tel : 02-3475-2495
jsohn@snue.ac.kr

논문투고일 : 2017.05.01.

심사종료일 : 2017.06.02.

게재확정일 : 2017.06.02.